

수 신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  
참 조 임 , 건설 주식회사

**제 목 대출약정서 등 관련 법률 검토 의견**

귀사(하)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본 법무법인은 위 제목 건에 대한 귀사(하)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.

I. 사안의 내용 및 질의의 요지

차주로 및 담보제공자로서 임 은 귀사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8-5 , 6 , 6 , 6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총 8세대(1개동)신축사업(이하 "본건 사업")과 관련하여 대출약정금 금 팔억삼천만원(₩830,000,000)의 대출약정서(이하 "대출약정서")를 2020년 3월 23일자로 체결하였고, 그 밖에 대출약정에 부수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등 부수하는 계약(이하 "부속 약정서들")을 체결하였습니다.

이에 귀사는 위 대출약정서 및 부속 약정서들(이하 총칭하여 "본건 약정서들")이 대한민국 법률상 적법, 유효하게 체결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대출약정서상 인출선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.

II. 검토의견

검토한 결과 당 법무법인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 및 작성된 본건 약정서들 및 제반 서류가 대한민국 법률상 적법, 유효하게 체결 및 작성되었으며, 대출약정서상 인출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.

다만, 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.

- (1) 각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권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본건 약정서들 및 제반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거나 하게 한

것으로서 인장, 제반 서류 등이 위조, 변조되었거나,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, 허위의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임

- (2) 각 당사자들이 본건 약정서들 및 제반 서류의 체결 및 작성에 관하여 법령, 규약,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경료하였거나 지체없이 경료할 것임
- (3) 본건 약정서들 및 제반 서류와 관련하여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과 일치하는 진정한 것임
- (4) 본건 대출약정, 주식근질권설정, 근저당권설정 등과 관련하여 차주 및 담보제공자의 의사동의를 대한 주주총회결의 절차 등이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소집절차 또한 유효한 것임.

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이상의 의견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3. 2 .

**법무법인(유한) 민**
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, 12층  
(역삼동, GT대공빌딩)

변호사 이 응 운

